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 시설 이용 지침

제정 2014.10.

개정 2015.07.

개정 2016.06.

개정 2019.01.

개정 2020.04.

개정 2023.03.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이하 ‘경기콘랩’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창작시설 이용에 필요한 대상, 조건, 시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시설)** 경기콘랩 창작시설 및 각 시설별 부속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촬영스튜디오(S1) : Sony Nex-FS700RH(카메라), Cannon 5D Mark 3(카메라), Sony A7M3(카메라), UWP-V1(무선마이크), 전동 크로마키 스크린, 영상 송출용 컴퓨터/TV, 부조정실 등
2. 녹음실(S2) : MacBook Pro 15, M-Track 8X4M(오디오 인터페이스), RODE NT2-A(콘덴서 마이크) 등
3. 영상편집실1(S3) : T3610 Workstation 등
4. 영상편집실2(S4) : T3610 Workstation, Mac Pro 6Core 등
5. 사진촬영스튜디오(S5) : Fomex Ex600U(조명), H1000(조명), CP400(조명), LT60(라이트텐트), 누끼보드판 등

**제3조(이용대상)**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 대상은 경기콘랩 회원으로 한다.

**제4조(이용시간)**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영상편집실1(S3), 영상편집실2(S4), 사진촬영스튜디오(S5)의 이용시간은 평일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로 한다.
2. 경기콘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영상편집실1(S3), 영상편집실2(S4),

- 사진촬영스튜디오(S5)**는 경기콘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 경기콘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신청 방법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준수)**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경기콘랩의 창작시설이용은 제3조(이용대상)에 따른다.
- 창작시설 내 부속/렌탈물품은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 창작시설은 허가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조작성 등 이유로 보유장비 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랩의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25조(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등 변상)에 따른다.

**제7조(이용수칙)** 경기콘랩 창작시설 이용 수칙은 다음과 같다.

- 창작 장비 중 영상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영상편집실1(S3), 영상편집실2(S4), **사진촬영스튜디오(S5)**을 출입할 때는 운영자가 확인해야 한다.
-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다.
- 운영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및 삭제하거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 하드디스크의 작업공간은 경기콘랩이 허용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 작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운영자에게 알린다.
- 이용 시 필요한 소모품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한다.
- 창작시설 내 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해킹하지 않는다.
- 창작시설 이용이 끝난 후에는 이용장비 및 공간을 초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경기콘랩 창작시설은 각 호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5조(출입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 경기콘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9조(손실에 대한 책임)** 경기콘랩 창작시설/장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제작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기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경기콘랩과 이용자 간의 협의로 비용 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
2.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 이용자가 동일한 모델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실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자와 함께 협의 및 장비테스트를 해야 한다.
3. 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에 변상을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변상시점과 변상방법을 약속, 합의하여야 한다.
4.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콘랩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